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목 차>

1.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2.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검토요청서 및 평가서 작성 등
3.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기준
4. 영향평가서의 검토사항
5. 영향평가서 보완·조정
6.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작 성 자	이름	손재영
	담당부서 (과)	세계유산정책과		직급	행정주사
	국장	임영아		연락처	042-481-4846
	과장	송인현		이 메 일	seonyu22@mail.g o.kr

2024. 07. 25.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성 명 (서 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2.규제조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1									
	3.위임법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7.26~2024.09.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제거·저감하도록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98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규정할 필요성 발생									
	7.규제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개발사업 또는 건축공사를 하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사업 기준 마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개발사업자(국가·지자체·국민)</td><td>특정 불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개발사업자(국가·지자체·국민)	특정 불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개발사업자(국가·지자체·국민)	특정 불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제거·저감함으로써 세계유산을 보존·관리함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11조의2제1항) ○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된 지역은 대부분 국가유산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여 대규모 건립사업이 계획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또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에 따르면, 영향평가 과정에서 권리보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도출하므로 실제 규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적용	0	0
	15.규제정비 계획	세계유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별표 1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2. 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이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현 행	개 정 안
	<u>의견을 들을 수 있다.</u>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해당 세계유산지구의 관할 시·도지사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른 시·도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국가유산청장에게 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대상사

현 행	개 정 안						
	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시기는 별 표 1과 같다.						
<신 설>	[별표 1]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평가 실시 시기(제3조의2제3항 관련) 1.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 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 설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법 제 11조의2제1항제1호 관련) <table border="1"> <tr> <th>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th><th>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th></tr> <tr> <td>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구역에서 시행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 리 중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td><td>「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 른 설계승인 전</td></tr> <tr> <td>나.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사업 또는 「주택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5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 설사업. 다만, 층수가 21 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 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을 설치(증축·증설하여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td><td>「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또는 「주 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td></tr> </table>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	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구역에서 시행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 리 중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 른 설계승인 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사업 또는 「주택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5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 설사업. 다만, 층수가 21 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 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을 설치(증축·증설하여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또는 「주 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						
가.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구역에서 시행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수 리 중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 른 설계승인 전						
나.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사업 또는 「주택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15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 설사업. 다만, 층수가 21 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 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을 설치(증축·증설하여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경우로 한정 한다.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또는 「주 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현행	개정안									
	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사업. 다만,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가 국가유산청장에 계해당 대상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같은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전 또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전									
	2. 총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가 500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3조의2제1항제1호 관련) <table><tr><th>구분</th><th>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th><th>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th></tr><tr><td>가. 도로의 건설</td><td>「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의 건설 사업</td><td>1)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2)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허가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td></tr><tr><td>나. 철도의 건설</td><td>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td><td>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td></tr></table>	구분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	가.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의 건설 사업	1)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2)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허가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철도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구분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								
가.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도로의 건설 사업	1)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2)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허가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철도의 건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그 밖의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현행	개정안		
		2)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사업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3) 「궤도운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치사업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 전
	다 . 항만의 건설	1)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 시설 건설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지정권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확정 전 나) 지정권자가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행 허가 전 다) 지정권자가 아닌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경우: 「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지정권자와 협의하는 때
		2)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9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고시 전 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 전 다)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항만공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3)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는 때
		4)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전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개발사업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라 .	「공항시설법」 제2조제9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

현행	개정안		
	공항의 건설	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행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전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행하는 경우: 「공항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마에너지 개발	1)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중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사업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사업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중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상이 아닌 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설치사업: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사업: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3)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의 설치사업. 다만, 같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전
		4)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5)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업 중 해저광물의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채취권 설정의 허가 전
		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사업 중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 설치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 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석유수출입업 또는 석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

현행	개정안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의 석유저장시설 설치 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사업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
	9)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건설사업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전
	바수자원의개발	1)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댐의 건설사업 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전 나)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아닌 댐 건설사업시행자가 행하는 경우: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중 하구둑의 설치사업	가)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전
	사·체육시설의설치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자를 하려는 자의 체육시설 설치사업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전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수립 전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승인 전

현행	개정안	
	4)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5)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아·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 허가 전
	자·산림자원관리시설의 설치 ·산림자원관리시설의 설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완료 전
	차·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카·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을 통보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현행	개정안										
	<table><tr><td>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가축분뇨처리업자가 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td><td>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계획의 허가 전. 다만, 가축분뇨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전</td></tr></table>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가축분뇨처리업자가 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계획의 허가 전. 다만, 가축분뇨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전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사업. 다만, 가축분뇨처리업자가 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계획의 허가 전. 다만, 가축분뇨처리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자원화시설(퇴비·액비를 만드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전을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전. 다)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의 재활용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전										
	3. 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 및 이영 제3조의2제1항제2호 관련) <table><tr><th>구분</th><th>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th><th>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th></tr><tr><td rowspan="3">가. 도시의 개발</td><td>1)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td><td>「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전</td></tr><tr><td>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td><td>「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td></tr><tr><td>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td><td>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시행하는 경</td></tr></table>	구분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	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시행하는 경
구분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제출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									
가. 도시의 개발	1)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전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	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시행하는 경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69 219 1150 577"> · 군계획시설사업 </td><td data-bbox="1150 219 1442 577">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전 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td></tr> <tr> <td data-bbox="869 577 1150 779"> 4)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td><td data-bbox="1150 577 1442 779">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td></tr> <tr> <td data-bbox="869 779 1150 891">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td><td data-bbox="1150 779 1442 89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td></tr> <tr> <td data-bbox="869 891 1150 985">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td><td data-bbox="1150 891 1442 985">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td></tr> <tr> <td data-bbox="869 985 1150 1249">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td><td data-bbox="1150 985 1442 124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td></tr> <tr> <td data-bbox="869 1249 1150 1361">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td><td data-bbox="1150 1249 1442 1361">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추천 신청 전 </td></tr> <tr> <td data-bbox="869 1361 1150 1485">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사업 </td><td data-bbox="1150 1361 1442 148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td></tr> <tr> <td data-bbox="869 1485 1150 1843"> 1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td><td data-bbox="1150 1485 1442 1843">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td></tr> <tr> <td data-bbox="869 1843 1150 2072"> 1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 </td><td data-bbox="1150 1843 1442 2072">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td></tr> </table>	· 군계획시설사업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전 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4)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추천 신청 전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1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1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 군계획시설사업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전 나)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4)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조성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추천 신청 전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1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시설사업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11)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사업	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현행	개정안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 전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 전
	1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13)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14)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1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 협의하는 때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택 공간공급촉진지구계획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 전
	나 . 농 어 촌 의 개발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및 같은 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 전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전 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외의 시행자가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59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전 「농업생산기반시설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승인 전
	다 . 산 업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현행	개정안		
	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산업단지개발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신청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작성하는 농공단지개발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 전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7)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 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장의 설립 승인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주계약 등의 완료 전
		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 완료 전
		1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전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라. 관	1)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	가) 관광객 이용시설업 또는 국제회의업의

현행	개정안	
	광단지의개발	업. 다만,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은 제외한다. 경우: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 전 나)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다) 카지노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라) 유원시설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 전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 전 마) 관광 편의시설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 전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3)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원사업 가)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관리청이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계획의 결정 전 나)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 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의 시설의 설치사업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을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공원이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5)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온천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마. 특정지역의개발	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제45조제4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토

현행	개정안	
	다른 기업도시개발계획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6)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별 개발기본계획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u>비고</u> 1.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시기는 가장 먼저 허가·인가·승인·결정 등(이하 “허가등” 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동일 세계유산지구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는 경우 나. 사업의 허가등을 할 당시에 대상사업이 제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이어서 세계	

현 행	개 정 안
	<u>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동일 세계유산지구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제3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거나, 동일 세계유산지구에서 그 사업 규모와 신규로 허가등을 받은 사업규모(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합이 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u> <u>다. 사업의 허가등을 할 당시에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시행되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영 제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구역 일부가 세계유산지구 내에 포함된 경우</u> <u>라. 하나의 대상사업의 사업구역이 세계유산지구의 안과 밖에 걸쳐 있는 경우</u> <u>마. 해당 사업의 허가등이 이루어진 후 위 표의 개정으로 새로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u>1)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미만인 사업이 동일</u>

현행	개정안
	<u>세계유산지구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 허가등으로 사업규모가 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의 규모와 신규로 허가등이 되는 사업 (사업자가 같은 경우만 해당 한다)의 규모와의 합이 세계 유산영향평가 대상규모 이상 이 되는 경우</u> <u>2) 위 표의 개정 당시 평가 대상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동일 세계유산지구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증가되는 규모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 또는 동일 세계유산지구에서 같은 사업자가 신규 허가등을 받으려는 같은 종류의 사업규모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15퍼센트 이상인 경우</u> <u>3.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위 표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세계유산 영향평가 실시 시기는 의제하려는 주된 사업의 허가등을 받기</u>

현 행	개 정 안
	<u>전으로 한다.</u> <u>4. 하나의 사업계획에 위 표에 따</u> <u>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이</u> <u>둘 이상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하</u> <u>“복합사업”이라 한다)은 하나의</u> <u>세계유산영향평가서로 통합 작성</u> <u>하거나 개별 사업별로 세계유산영</u> <u>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함께 세계유</u> <u>산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u> <u>복합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계</u> <u>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u> <u>복합사업에 대해 하나의 세계유산</u> <u>영향평가서를 통합 작성하거나 세</u> <u>계유산영향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u> <u>없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세계유</u> <u>산영향평가 실시 시기에 따로 세</u> <u>계유산영향평가를 해야 한다.</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대한민국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세계유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2023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세계유산 주변 개발사업 등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음
- 법률에서는 세계유산지구 또는 그 밖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률 시행 전 구체적인 범위 등 기준을 신설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마련
	내용	본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됨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규제대안2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이해관계자 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입법예고 (‘24.7.26. ~’24.9.4.)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 상사업 등) ① 법 제11조의2제1 항제2호에 따른 “세계유산의 탁 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 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갯벌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 (수용) 추후 환경영향평가 등 타법에 의한 영향평가 관련 법령에 세 계유산 영향검토 추가 협의예정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항만개발과	입법예고 (‘24.7.26. ~’24.9.4.)	<table><tr><th>구분</th><th>세계유산영 향평가 대상사업</th><th>세계유산영 향평가 실시 시기</th></tr><tr><td>다. 항만의 건설</td><td>2) 「항 만 법」 제27 조제2항발 개사업</td><td>「항 만 법」 제9조제2 항제2호에 따른 항만 개발사업 다만, 「항 만공 사 법」 (港灣公 社)가 하는 항만공사 는 「항만 법」 제22 조의제1항 제2호에 따른 항만 개발사업 에 적용한다.</td></tr><tr><td></td><td>5) 「항 만 법」 제21 조제1항제 2호항만 건설사업 다만, 「신 항만건설 촉진법」 제 21조제1 항제2호에 따른 항만 건설사업</td><td>「항 만 법」 제9조제2 항제2호에 따른 항만 개발사업 다만, 「항 만공 사 법」 (港灣公 社)가 하는 항만공사 는 「항만 법」 제22 조의제1항 제2호에 따른 항만 개발사업 에 적용한다.</td></tr></table>	구분	세계유산영 향평가 대상사업	세계유산영 향평가 실시 시기	다. 항만의 건설	2) 「항 만 법」 제27 조제2항발 개사업	「항 만 법」 제9조제2 항제2호에 따른 항만 개발사업 다만, 「항 만공 사 법」 (港灣公 社)가 하는 항만공사 는 「항만 법」 제22 조의제1항 제2호에 따른 항만 개발사업 에 적용한다.		5) 「항 만 법」 제21 조제1항제 2호항만 건설사업 다만, 「신 항만건설 촉진법」 제 21조제1 항제2호에 따른 항만 건설사업	「항 만 법」 제9조제2 항제2호에 따른 항만 개발사업 다만, 「항 만공 사 법」 (港灣公 社)가 하는 항만공사 는 「항만 법」 제22 조의제1항 제2호에 따른 항만 개발사업 에 적용한다.	• (수용)
구분	세계유산영 향평가 대상사업	세계유산영 향평가 실시 시기										
다. 항만의 건설	2) 「항 만 법」 제27 조제2항발 개사업	「항 만 법」 제9조제2 항제2호에 따른 항만 개발사업 다만, 「항 만공 사 법」 (港灣公 社)가 하는 항만공사 는 「항만 법」 제22 조의제1항 제2호에 따른 항만 개발사업 에 적용한다.										
	5) 「항 만 법」 제21 조제1항제 2호항만 건설사업 다만, 「신 항만건설 촉진법」 제 21조제1 항제2호에 따른 항만 건설사업	「항 만 법」 제9조제2 항제2호에 따른 항만 개발사업 다만, 「항 만공 사 법」 (港灣公 社)가 하는 항만공사 는 「항만 법」 제22 조의제1항 제2호에 따른 항만 개발사업 에 적용한다.										
		<table><tr><th>구분</th><th>세계유산영 향평가 대상사업</th><th>세계유산영 향평가 실시 시기</th></tr><tr><td></td><td>4) 「신항만</td><td>「신항만건</td></tr></table>	구분	세계유산영 향평가 대상사업	세계유산영 향평가 실시 시기		4) 「신항만	「신항만건	• (수용)			
구분	세계유산영 향평가 대상사업	세계유산영 향평가 실시 시기										
	4) 「신항만	「신항만건										

이해관계자 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건설촉진 법 제2조제2 항에 따른 시설사업 세계유산영 향평가기 실시 「항만법」 제9조제2 항에 따른 항만공사 건설사업 「항만법」 제9조제2 항에 따른 항만공사 건설사업 「항만법」 제9조제2 항에 따른 항만공사 건설사업 「항만법」 제9조제2 항에 따른 항만공사 건설사업	
국방부	입법예고 (‘24.7.26. ~’24.9.4.)	구분	세계유산영 향평가 대상사업 세계유산영 향평가 실시 시기 아. 국방·군 사의설치 1) 「국방·군 사시설관 련법」 제2 조에 따른 국방·군 사시설 <삭 제>	• (수용)
인천광역시 서구	입법예고 (‘24.7.26. ~’24.9.4.)	제3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 상사업 등) ② (생략)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계유산완충구역 내에서 층수 가 21층 이상이거나...(이하 생략) ④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요청 을 받은 자는 회복할 수 없는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수용) 대상사업의 명확한 요건 [별표1] 에 명시 및 4항 삭제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본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사업으로 한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됨

3. 규제목표

-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제거·저감하도록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세계유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사업의 범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실시하고자 하였음.
- 사업의 유형 및 종류를 구분하고, 사업 실시 예정지역(세계유산지구)에 따라 기준을 상이하게 설정함으로써 규제 수단의 비례성을 갖추었음
- 본 개정안에서 제시한 사업의 범위 기준은 목적 및 평가·심의내용이 유사한 타 법령(「경관법」, 「환경영향평가법」, 「건축법」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현 개정안은 대상사업을 유형에 따라 규모(총사업비, 합계연면적 등)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개념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대상사업을 규모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유연한 분류체계를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현 개정안은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하고 있음
사후 평가관리		동 제도의 목적은 사전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에 반영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를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국제기구를 통해 등재된 세계유산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이미 제한적임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영국(바세틀로) : 등록된 유산과 그 주변 환경(setting)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계획에 대해 유산영향평가(HIA)를 수행하여야 함
- 캐나다(노스 덤프리스) : 건축적,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건축물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 주변에 인접한 개발 제안에 대해 HIA 수행
- 호주(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 주(state) 내의 유산지역 및 주변 환경 등 유산의 중요성을 지닌 모든 요소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에 대해 HIA 수행
- 일본 : 유산범위 내의 정비사업, 유산범위 내의 조사(발굴조사, 건물조사), 유산범위 및 완충지역 내 이벤트 행사, 법제도 및 규제를 변경하는 경우(도시계획, 경관, 건축규제 완화 등)

※ 출처: 고가온·김충호, 2022, "세계유산 영향평가(HIA) 범위 및 대상 비교분석:주요 국외 당사국의 HIA운영지침을 중심으로"

○ 타법사례

- 경관법 제26조에서 제28조까지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개발사업, 건축물로 구분하여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도로사업,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사업에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0조에서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개발사업으로 건축되는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의 경우 사전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건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경우 층수 21층 이상이거나 합계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마련>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사업이 세계유산과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 및 평가항목이 유사한 규제(경관,환경 등)와 같이 사업의 범위 및 규모가 큰 경우에 한하여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규제를 수용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사업대상지 주변 세계유산의 존재 인지에 어려움이 없어 행정적 집행에 곤란한 사항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재정적 집행에 곤란한 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2023년 10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 본 개정안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운영을 통하여 개발사업이 세계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저감·제거하는 방안을 사전에 협의함으로써 세계유산과 주변 개발의 지속가능한 공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규제 정비계획

해당없음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24.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동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규제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본 개정안은 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합리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세계유산 보호·보존이라는 입법목적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규제부담 역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4	2024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 등을 하려는 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법 제11조의2제1항)

○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된 지역은 대부분 국가유산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여 대규모 건립사업이 계획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또한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에 따르면, 영향평가 과정에서 권리보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도출하므로 실제 규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음.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마련>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자
활동제목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 등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피규제대상 수 추정 한계 - 세계유산지구에 속한 지역은 대부분 국가유산구역, 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하여 대규모 건립사업이 계획되기는 어려운 상황임. 그러나 만약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이 계획된다면 피규제 기업의 직접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지침에 따르면, 영향평가 과정에서 권리보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협의하여 도출하므로 규제에 따른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다만, 현재 기준으로 세계유산지구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또는 30만㎡ 이상 개발사업 등(제3조의2 제1항)의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본 규제영향분석서에서는 정성분석함. ○ 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 추산 - 수요 예측이 어려운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사업 또는 개발사업과 달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제3조의2 제2항)의 경우 국가유산 주변의 건축계획 사례에서 대상사업의 수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국가유산(사적) 주변 건축계획의 현상변경 등 심의내역 중 층수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은 총 9건으로 나타남 * 국가유산 주변 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계획 심의 현황('19-'23)

연도	대상유산	신청내용	연면적(m²)	최고층수
2020	연천 전곡리유적 (국가유산)	도시계획(공동주택) 결정	149,753	33층
2020	김포 장릉 (세계유산)	공동주택단지 조성	288,831	23층
2020	광주 조선백자요지 (국가유산)	공동주택 신축	121,844	22층
2021	김제군 관아와 향교 (국가유산)	공동주택 신축	19,484	24층
2021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국가유산)	공동주택 신축	127,763	15층
2021	대구 경상감영지 (국가유산)	주상복합 신축	142,473	49층
2022	관문성 (국가유산)	주상복합 신축	201,973	41층
2023	관문성 (국가유산)	이화지구 도시개발사업	291,567	33층
2023	공주 공산성 (세계유산)	주상복합 건설	207,729	45층

* 출처: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s://www.khs.go.kr/cop/bbs/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1019&mn=NS_03_03_04](동일인 중복신청건 제외)

- 따라서 2019-2023년 동안 개정안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연평균 1.8건으로 나타남

○ 비용단가 추정 한계

- 본 개정안에 따라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규모 건축물 등을 설치·증설하려는 사업자는 유산영향평가서 작성비용을 부담할 수 있음
-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영향평가 도입을 권고한 이래로 본 개정안은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유산영향평가 근거법령으로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고 환경영향평가 등 타법에 따른 영향평가제도와 평가서 양식이 다르므로, 비용(단가)을 추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유산영향평가에 따른 사업 지연의 문제 관련, 환경영향평가와 유사하게 통상적으로 사업 인가 전 타 법령에 의한 사전행정절차 기간 내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신규 도입 및 실시 시기 규정에 따라 사업 지연되는 등 기업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용역비 추산

- 과거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용역기관이 작성한 사례가 있어, 이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용역비를 추산함

	* 대흥사 000 건립사업 유산영향평가서 용역 산출내역(000대 산학협력단/20년)	
	예산항목	예산액(원)
	인건비	49,057,794
	유인물비	2,036,591
	여비	2,087,655
	재료비	1,104,510
	원고료, 번역료 등	8,000,000
	위탁연구개발비	14,600,000
	간접비	13,568,000
	부가세	9,045,450
	총계	99,500,000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국민
활동제목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향유
편익항목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향유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지역의 세계유산 보존·활용 활성화를 통해 해당 세계유산 지구 내 주민들에게 물리적 경관 개선 및 다양한 활용프로그램 등 실질적 혜택이 부여될 수 있음. 또한, 세계유산 지구를 방문하는 일반 국민들도 문화향유기회를 누릴 수 있으므로 비용대비 편익이 상당함 ○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 사례와 같이 세계유산 주변에 유산에 미치는 영향 검토 없이 대규모 건설사업이 승인될 경우,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세계유산의 지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자, 유산의 관리주체 등과 부정적 영향을 회피·저감할 수 있는 조치를 협의함으로써 세계유산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찾을 수 있음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전검토요청서 및 평가서 작성 등								
	2.규제조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4, 제3조의5								
	3.위임법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3항, 제11조의3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7.26~2024.09.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제거·저감하도록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98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규정할 필요성 발생								
	7.규제내용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자는 사전검토를 거쳐 평가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세계유산지구 주변 개발사업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개발사업자(국가·지자체·국민)</td><td>특정 불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개발사업자(국가·지자체·국민)	특정 불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개발사업자(국가·지자체·국민)	특정 불가								
9.규제목표	사전검토를 통해 대상사업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후속절차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상사업자의 부담 경감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 필요성을 검토하고, 규제 이행에 필요한 방법론을 사전에 안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요청서의 작성에 따른 비용보다 편익이 상당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여부기준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4(대상사업의 사전검토) ① <u>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요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전검토요청서(이하 “사전검토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u>1. 대상사업의 위치</u> <u>2. 대상사업의 면적, 총사업비 등 규모</u> <u>3. 대상사업 구역 내 건축 예정 건축물의 최고높이</u> <u>4.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세계유산 구역과의 이격거리</u> <u>5. 대상사업의 허가·인가·승인·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의 장”이라 한다)</u> <u>6.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대상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u>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려

현 행	개 정 안
	<u>야 한다.</u> ③ 국가유산청장은 사전검토요청서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허가기관의 장 및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 작성 대상: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세계유산영향평가서 작성 비대상: 대상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 이 경우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실시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④ 사전검토요청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후 대상사업의 계획 중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전검토 절차를 다시

현 행	개 정 안
	<u>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검토의 구체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u><신 설></u>	<u>제3조의5(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① 제3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해야 한다.</u> <u>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 결과에 따라 작성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u> <u>1. 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대한 구체적 설명</u> <u>2.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u> <u>3. 제거·저감방안</u> <u>4. 잔존 영향의 규모 및 범위</u>

현 행	개 정 안
	5. 세계유산지구 내 토지 소유자,
	<u>거주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u>
	6.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종합의
	<u>견</u>
	③ 사업자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 <u>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세계유산영</u> <u>향평가서 초안을 전국에 보급되는</u> <u>일간신문 또는 지역신문에 1회 이</u> <u>상 공고하고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u> <u>에 게재하여 제2항제5호에 따른</u> <u>이해관계자의 의견을 20일 이상 들</u> <u>어야 한다.</u> ④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시 <u>기는 별표 1과 같다.</u>

현행	개정안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대한민국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세계유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2023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사업 등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됨
- 법률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및 평가서의 제출 방식·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 시행 전 구체적인 절차를 신설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영향평가 지침서(Guidance and Toolkit for Impact Assessments in a World Heritage Context, 2022) 등 국제적 표준 절차가 정립되어 있음
- 본 개정안은 유네스코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부여군	입법예고 (‘24.7.26. ~’24.9.4.)	제3조의4(대상사업의 사전검토) ① (생략) 사전검토요청서를 작성하여 <u>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3조의6(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생략)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u>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 (수용)

3. 규제목표

- 사전검토를 통해 대상사업에 대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후속절차 이행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국제적 표준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고자 하였음
- 대상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영향평가 실시가 아닌, 개별적·구체적으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검토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규제 수단의 비례성을 갖추었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제안 사업의 잠재 영향에 대한 평가 절차: ①스크리닝 ②스코핑 ③기준선 평가 ④제안 사업 및 대안 ⑤영향의 식별 및 예측 ⑥영향의 평가 ⑦완화 및 증진 ⑧보고 ⑨보고서 검토 ⑩의사 결정 ⑪후속조치

※ Guidance and Toolkit for Impact Assessments in a World Heritage Context(2022, UNESCO)

○ 타법사례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의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인수·합병등 사전검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국가핵심기술 사전검토, 「원자력안전법」의 대형방사선발생장치 사용 허가 사전검토 등 다수의 법률에서 사전검토 절차를 채택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법」은 평가준비 절차를 채택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절차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행정적 집행에 곤란한 사항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재정적 집행에 곤란한 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되어 '24.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동법에 따르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규제합리화를 위해 대상사업에 대해서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적용 필요성을 사전검토하고,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부담을 최소화함
- 본 개정안은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절차를 기술함으로써 세계유산 보호·보존이라는 입법목적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규제부담 역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기준								
	2.규제조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6								
	3.위임법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3항·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7.26~2024.09.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제거·저감하도록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98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 발생								
	7.규제내용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지정 요건 및 절차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td><td>특정 불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특정 불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특정 불가								
9.규제목표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중립적·전문적 평가 수행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 내에서 신청 가능한 기관의 범위 및 지정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입법목적 달성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6(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마.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과 관련된 학술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현 행	개 정 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갖추
	가. 국가유산 관련 학과 및 세계
	유산, 건축·토목, 도시계획·도시
	공학, 조경·경관·지질·생태 분
	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
	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
	위를 취득한 사람
	3.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에 필
	요한 전담조직을 갖추
	②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
	1호서식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
	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
	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
	하 같다)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
	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
	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
	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현 행	개 정 안
	<u>한다.</u>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세계유산영향평가 사업계획서
	3. 최근 3년간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에 관한 서류(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대한민국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세계유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2023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사업 등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됨
- 동법에 따르면 대상사업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영향평가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 시행 전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구체화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본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 신청 가능한 기관의 범위, 지정 요건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입법예고 (24.7.26. ~24.9.4.)	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생략) 3. 「 <u>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u> 」 에 따른 <u>한국전통문화대학교</u>	• (수용)

3. 규제목표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중립적·전문적 평가 수행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 중립적·전문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공립연구기관 및 학교 등과 같은 기관 또는 문화·자연유산 관련 목적의 비영리·공익 법인으로 정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고자 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평가기관, 「발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평가기관 등 다수의 법령에서 평가기관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평가기관 지정은 신청에 의하며, 지정 요건이 명확하여 행정적 집행에 곤란한 사항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재정적 집행에 곤란한 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되어 '24.11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동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하여야 함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은 사업자에게 포섭되지 않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전문성에 근거한 평가를 수행해야 함
- 본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정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지정 신청절차 등을 구체화함으로써 평가기관의 지속적인 전문성·중립성 함양을 유도하여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임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향평가서의 검토사항								
	2.규제조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7								
	3.위임법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7.26~2024.09.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제거·저감하도록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98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에 관련된 사항 규정 필요성 발생								
	7.규제내용	세계유산평가서의 검토는 문화유산위원회를 거치며, 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지원센터, 행정기관의 장, 관계전문가</td><td>특정 불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지원센터, 행정기관의 장, 관계전문가	특정 불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지원센터, 행정기관의 장, 관계전문가	특정 불가								
9.규제목표	전문적인 자료 수집 및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서가 적절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해당 대상사업 이행에 관련된 자 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의견 및 자료제출로 인한 비용은 경미한 데 반해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적정 검토로 인한 편익은 상당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7(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3조의5에 따라 제출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분석 방법이 적정한지 및 분석결과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2. 제거·저감방안이 적정한지 여부 3. 잔존 영향의 유무 및 그 정도에 관한 예측이 타당한지 여부 4. 대상사업의 추진으로 달성되는 공익·사익과 해당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형량이 적정한지 여부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2. 대상사업 또는 해당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 3.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현 행	개 정 안
	<u>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가. 국가유산 관련 학과 및 세계유산, 건축·토목, 도시계획·도시공학, 조경·경관·지질·생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나. 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대한민국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세계유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2023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사업 등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됨
- 법률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법률 시행 전 구체적인 범위 등 기준을 신설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본 개정안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지원센터 및 관계전문가 등 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관계되거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입법목적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이코모스 한국위원회	입법예고 (‘24.7.26.~ ‘24.9.4.)	제3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③ 국가유산청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2. 대상사업 또는 해당 세계유산에 관계된 행정기	• (수용)

		관의 장 3.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u>국가유산 관련학과 및 건축·토목, 도시계획·도시공학, 경관·조경, 생태, 지질 등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u>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나. 가목에 따른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궁능유적본부	입법예고 (‘24.7.26.~ ‘24.9.4.)	제3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③ (생략) 3.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u>국가유산 관련학과 및 건축·조경·토목, 도시계획·도시공학·세계유산 분야</u>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	• (수용)
한국전통조경학회	입법예고 (‘24.7.26.~ ‘24.9.4.)	제3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③ 국가유산청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기관에 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2. 대상사업 또는 해당 세계유산에 관계된 행정기관의 장 3.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 (수용)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u>국가유산 관련학과</u> <u>및 건축·토목, 도시계획·</u> <u>도시공학, 경관·조경, 생</u> <u>태, 지질 등 관련 분야의</u> <u>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u> <u>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u> <u>이상 근무한 경력(석사학위</u> <u>를 취득하기 전의 근무 경</u> <u>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u> 나. 가목에 따른 분야 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한국전통문화 대학교	입법예고 (‘24.7.26.~ ‘24.9.4.)	제3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 서의 검토) ③ (생략) 3. (생략) 가. <u>국가유산 관련학과</u> <u>및 건축·토목, 도시계획·</u> <u>도시공학, <u>조경·경관 분야</u></u> <u>등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u> <u>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u> <u>년 이상 근무한 경력</u>	• (수용)

3. 규제목표

- 전문적인 자료 수집 및 다양한 의견 청취를 통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적절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대상을 대상사업 및 해당 세계유산에 관계되거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실시하고자 하였음
- 국가유산청장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대상사업의 실시 또는 해당 세계유산의 보호에 책임이 있는 자인 바, 규제 수단의 비례성을 해치지 아니함
- 본 개정안에서 제시한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 대상 범위 기준 역시 목적 및 평가·심의내용이 유사한 타 법령(「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서 검토 시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의뢰 등을 할 수 있음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에서 지표조사 대상 관련의견을 제시하는 관계전문가의 요건을 학위, 소속 등에 근거하여 정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관계전문가의 확보 및 협조 요청에 어려움이 없어 행정적 집행에 곤란한 사항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재정적 집행에 곤란한 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24.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동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세계유산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세계유산의 가치를 저해하거나 대상사업자의 권리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다각적·전문적인 검토를 요함
- 본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검토 시 관계 행정기관과 검증된 전문가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영향평가서 보완·조정								
	2.규제조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9								
	3.위임법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제2항, 제11조의5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7.26~2024.09.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제거·저감하도록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98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사항을 규정할 필요성 발생								
	7.규제내용	평가서의 검토 항목의 흠결이 있는 경우 평가서 또는 대상사업계획에 대하여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대비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대상사업자(국가·지자체·국민)</td><td>특정 불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상사업자(국가·지자체·국민)	특정 불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대상사업자(국가·지자체·국민)	특정 불가								
9.규제목표	세계유산영향평가서 검토 시 흠결이 있는 사항을 보완하여 적절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평가서의 검토 항목 흠결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검토 진행이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조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완·조정으로 인한 비용 대비 검토 진행을 통한 편익이 상당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9(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등) ①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 계획등”이라 한다)을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3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의7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계유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상사업 계획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대상사업계획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보완·조정 2. 제1항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사업계획등의 보완·조정 ③ 법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보완

현 행	개 정 안
	· 조정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보완 · 조정된 세계유산영향평가서(대상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에 변경사항 대비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제3조의7에 따른 절차를 말한다.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대한민국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세계유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2023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됨
- 동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영향평가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조정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요건 및 절차 등을 위임한 바, 법률 시행 전 구체적인 범위 등 기준을 신설하여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본 개정안은 보완·조정 사유를 평가서의 흠결이 있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계부처, 국민 등	입법예고('24.7.26.~'24.9.4.)	해당없음	

3. 규제목표

- 세계유산영향평가서 검토 시 흠결이 있는 사항을 보완하여 적정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평가서 또는 대상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평가서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 한함으로써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규정하고자 하였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시 보완·조정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함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보완·조정 요청의 요건 및 절차 등이 명확하여 행정적 집행에 곤란한 사항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재정적 집행에 곤란한 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되어 '24.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동법에 따르면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평가를 통해 세계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해 나가는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취지를 고려할 때, 평가서의 흠결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검토가 어려우므로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피평가자에게 보완·조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본 개정안은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입법목적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의 규제부담 역시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등								
	2.규제조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10, 별표2								
	3.위임법령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8제3항·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4.07.26~2024.09.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제거·저감하도록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798호, 2023. 10. 31. 공포, 2024. 1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을 규정할 필요성 발생								
	7.규제내용	지원센터 지정 신청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정취소·업무정지의 기준을 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로 지정받았거나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개발사업자(국가·지자체·국민)</td><td>특정 불가</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개발사업자(국가·지자체·국민)	특정 불가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개발사업자(국가·지자체·국민)	특정 불가								
9.규제목표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전문성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지원센터는 사전검토·평가준비 지원 등 세계유산영향평가 운영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바, 부정 지정·요건 미충족 등 중대한 흠결이 있을 때 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지원센터의 전문성 및 중립성을 제고함으로써 세계유산의 보호·보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므로 비용 대비 편익이 상당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10(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세계유산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된 연구 또는 업무수행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11조의8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등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추는 것 ②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

현 행	개 정 안
	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 또는 법인에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11조의8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반기별 운영실적: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

현 행	개 정 안
	<u>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u><신 설></u>	<u>[별표 2]</u> <u>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u> <u>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u> <u>기준(제3조의10제4항 관련)</u> 1. <u>일반기준</u> 가. <u>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u> <u>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u> <u>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u> <u>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u> <u>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u> <u>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u> <u>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u> <u>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u> <u>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u> 나. <u>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u> <u>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u> <u>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u> <u>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u> <u>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u> <u>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u> <u>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u> <u>을 기준으로 한다.</u> 다. <u>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u> <u>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u> <u>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u>

현행	개정안													
	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처분권자의 보완 요구에 성실히 따른 경우 2)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개별기준 <table><tr><th rowspan="2">위반행위</th><th rowspan="2">근거 법조문</th><th colspan="3">처분기준</th></tr><tr><th>1차 위 반</th><th>2차 위 반</th><th>3차 이 상 위 반</th></tr><tr><td>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td><td>법 제 11조의 8</td><td>지정취</td><td></td><td></td></tr></table>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이 상 위 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 11조의 8	지정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이 상 위 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 11조의 8	지정취												

현행	개정안				
		제3항 제1호	소		
	나.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 11조의 8 제3항 제2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 11조의 8 제3항 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대한민국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당사국으로서 세계유산을 보호·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2023년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세계유산 주변의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됨
- 법률에서는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역할을 규정하며 그 지정 또는 제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법률 시행 전 구체적인 처분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본 개정안은 법률에서 정한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정한 것으로,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24.8.21.)	[별표 2]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제3조의13 관련) 1. 일반기준 라. 국가유산청장은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법 제11조의8	• 수용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	----------------------------------	--

3. 규제목표

-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전문성 제고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 신청을 위한 기술적 사항 및 법률에서 정한 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지정에 중대한 흠결이 있거나 현저히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도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비가역적으로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에 한하여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처분을 하는 것은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을 갖추었음
- 본 개정안에서 제시한 처분의 세부기준은 목적 및 평가·심의내용이 유사한 타 법령(「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③ 예비분석모델		
	판단 근거	
④ 대상 업종		
⑤ 예비분석내용		
⑥ 차등화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없음

○ 타법사례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현 개정안과 동일한 기준을 택하고 있음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요건이 명확하여 행정적 집행에 곤란한 사항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추가적인 예산 소요를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재정적 집행에 곤란한 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종합결론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되어 '24.11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동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의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세계유산영향평가 과정에서 대상사업자의 편익에 크게 기여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가 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본 개정안은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업무정지·지정취소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지원센터가 적정하게 지정·운영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됨